

◆ 科 學 技 術 賞 審 查 規 程 ◆

第1條 本規程은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以下本會と稱함)主催로 每年 開催하는 全國科學技術者大會에서 施賞할 科學技術賞 受賞者를 選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賞의 種類는 本賞과 特別賞의 2種으로 한다.

第3條 前條 本賞은 下記 5個專門分科別로 業績 또는 功績이 卓越하여 우리나라의 科學技術 向上에 크게 寄與하였다고 認定되는者 각 1人에게 授與한다.

本賞中 가장 우수하다고 認定되는 것을 大統領賞으로 한다.

第1分科 物理學, 化學, 數學, 地質學, 鑛物學, 家政學, 天文學, 氣象學 및 海洋學

第2分科 農學, 生物學, 林學, 園藝學, 蟻學, 水產學, 廉產學 및 獸醫學

第3分科 機械工學, 金屬工學, 工業化學, 化學工學, 纖維工學, 造船工學, 電子工學, 原子工學 및 發明

第4分科 土木工學, 建築工學, 電氣工學, 採礦工學 및 國土計劃

第5分科 醫學, 藥學, 齒醫學, 營養學 및 體育學

第4條 特別賞은 下記 各分野別로 業績 또는 功績이 顯著하여 우리나라 科學技術發展에 寄與하였다고 認定되는者 각 1人에게 授與한다.

但, 一般社會 또는 公共機關에서 提供을 하는 賞이 있을 때에는 本條規程에 拘碍됨이 없이 이를 特別賞으로 授與할 수 있다.

1. 科學教育分野

2. 科學振興分野

3. 青少年 科學活動分野

第5條 受賞者에게는 賞狀 賞金 및 徽章을 授與한다. 賞金의 額數는 大會豫算을 參酌하여 每大會 開催時 本會會長이 決定한다.

第6條 受賞者를 選定하기 위하여 審查委員會을 둔다.

本賞 審查委員會는 第3條의 分科別로 本賞分科委員會 외 特別賞分科委員會를 構成하고 各 所屬分科의 本賞 및 特別賞受賞候補者를 選定하여 이를 全體 審查委員會에 上程한다.

審查委員의 數는 各分科別 7人으로 하고 每年 大會開催時 會長이 이를 委嘱한다.

全體 審查委員會 및 分科委員會는 審查委員長 및 分科委員長 각 1人을 互選한다.

審查委員長 및 分科委員長은 各히 全體委員會 및 所屬分科委員會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되고 審查業務을 統轄한다.

第7條 各委員會는 在籍委員 三分之二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受賞者の 選定은 全體 審查委員會의 決定을 最終으로 한다.

第8條 受賞者の 選定業務는 本會會員團體 및 各分科別 審查委員의 推薦과 調査 및 協議에 依하여 秘密裡에 進行토록 한다.

調查期間의 餘裕上 會員團體 및 分科別 審查委員前項의 推薦은 각히 大會開催 60日 및 30日前에 마감토록 한다.

第9條 各分科委員長은 審查가 終結한 後 該當分科受賞者에 關한 다음의 書類를 會長에게 지체 없이 提出하여야 한다.

1. 選定理由書(橫書) 1通
2. 被選定者의 履歷書(橫書) 1通
3. 被選定者의 業績, 功績 및 必要한 證憑資料
4. 被選定者의 寫眞(上半身 脫帽, 名牌板) 2枚

第10條 審查委員會에 幹事長 및 幹事 各 1名을 둔다.

幹事長은 本會事務總長으로 하고 幹事는 本會職員中에서 幹事長이 委嘱하여 審查委員長 및 分科委員長의 命을 받아 庶務를 處理한다.

第11條 審查委員과 幹事長 및 幹事는 審查期間中 手當 또는 旅費를 받을 수 있다.

附 則

1. 受賞者の 業績 및 功績은 大韓民國政府樹立以後의 것을 對象으로 審查한다.

2. 受賞자는 우리나라의 國籍을 가진者로 한다.

3. 受賞者の 業績 또는 功績이 2人以上의 共同으로 이루어진 境遇에는 그 共同名義로 授賞한다. 但, 團體에 대하여는 授賞하지 않는다.

4. 死亡한 者의 業績 또는 功績은 賞의 對象에서 除한다.

但 受賞者로 選定된 後에 死亡한 者에 대하여는 授賞할 수 있다.

5. 受賞對象者가 없는 部門의 賞金割當額은 本會에 彙屬한다.

6. 受賞者가 授賞式이 있은 後 6個月이 經過하도록 賞을 受領하지 않을 境遇에는 이는 本會에 彙屬시킨다.

7. 審查委員의 任務는 大會終了와 同時に 終結한다.

8. 本規程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審查委員會와 本會會長이 合議決定한다.